

공공건축지원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추가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요조사 개요

- (추진 배경) 높아지는 공공건축 사업에서의 정보화 전환 요구에 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현 센터(건축 공간연구원) 역할을 보완하고, 정책 수립과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 0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함
- (수요조사 대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지정요건을 갖추어 신규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 (수요조사 기간) '24. 5. 20. ~ '24. 8. 2.*

* 해당 기간 내 회신한 기관에 대하여 심사 방법 등 추가 안내 예정(8월)

2. 수행 예정 업무

- (업무 범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업무 중, 현 센터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요청하는 업무

< 법 제24조에 따른 주요 업무 >

구분	세부 업무
가. 건축기획 업무	○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의뢰받은 기획 업무
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 공공건축 발주에 관한 자문 응답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운영 지원 등 발주 관련 자문, 관련 정책 수립·지원 등)
	○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화 전환 지원, 관련 통계 생산 및 고도화, 공공건축 인력 Pool 구축·관리, 사업 아카이빙 등)
	○ 기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 기간) 센터 지정 시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3. 수요회신 방법

- (회신 방법)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공문 시행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으로 제출 시 수요조사 마감일 18시까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 도착한 건에 대하여만 인정

- (제출서류) 신청서(붙임1) 및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전담조직, 예산 등을 갖추었다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별도 양식 없음)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

가.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나.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 (기타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3782)

4. 세부 일정 안내

○ (추가 공고) 회신 기관 대상으로 세부 심사 방법 및 일정, 추가 제출서류(센터 운영규정* 등) 안내 예정(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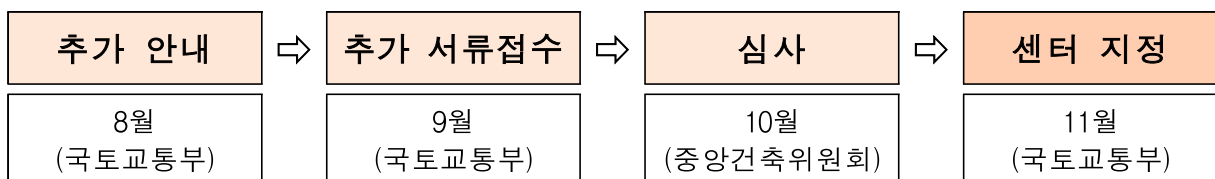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운영규정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

다. 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

○ (향후 일정) 추가 서류접수(9월) → 심사(10월) → 센터 지정(11월)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신청서(수요조사 회신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기관	기관 또는 단체명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설립 근거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소개 또는 신청사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공고에 따른 수요조사에 회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편철순서)	1.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보유 증빙자료 2.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향후 제출서류 (별도안내)	공공건축 지원업무 업무규정(내규 등)